

2020년 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0차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0. 11. 20.(금요일), 14:0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최종호(부위원장), 김태식, 만당(최재호), 배영동,
좌혜경, 천혜숙, 황경숙 (이상 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 의 사 항】		
1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심의	부분공개
2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교육조교 인정 심의	부분공개
3	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인정 심의	부분공개
【검 토 사 항】		
4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정상화 조치계획(안) 검토	비공개
【보 고 사 항】		
5	‘옷채취기술’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연구용역 결과	부분공개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20-10-001

1.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심의

가. 제안사항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따라 ‘인삼재배와 문화’에 대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19.4~8월)을 실시하고, 제8차 무형문화재위원회(’20.9.18.)에서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예고하기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관보에 30일간(’20.9.28.~10.27.) 공고하고 종목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20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9.1.23.)
- ‘인삼재배와 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19.4.15.~8.12.)
- 2019년 제14차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19.9.20.)
 - **보류함.** 인삼의 전통 재배법, 가공법, 관련 전통문화 등을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음.
-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출(’20.2~6월)
- 인삼재배와 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 관계전문가 자문회의(’20.6.18.)
 -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기관 대표 참석, 지정 방향 논의 등
- 2020년 제6차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20.7.17.)
 - **보류함.** 종목 명칭에 대하여 추후 논의기로 함.
- 2020년 제8차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20.9.18.)
 -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 예고함.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20.9.28.~10.27.)
 - **종목 명칭: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2) 학술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9.4~8월

○ 조사기관 :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조사의 조사지표에 따른 지정가치 조사

-조사지표별 심화조사

3) 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

○ 산자락의 순환식 이동 농법을 통한 자연친화적 토지 이용, 햇빛의 방향과 바람의 순환을 중시하는 해가림 농법, 밭의 이랑을 낼 때 윤도(輪圖, 나침반)를 이용하여 좌향(坐向)을 살피는 등 인삼재배는 현재에도 전통 농법을 지속 유지하고 있음.

○ 인삼에 대한 기록은 삼국시대부터 찾아 볼 수 있고, 조선시대에는 각종 의학서 및 농서류 문헌에서 그 효능 및 재배 관련 기록이 확인됨. 우리나라 인삼은 약효와 품질이 우수하여 삼국시대부터 중국, 일본과 중요 교역품 중에 하나였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 농업 및 상업, 국제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인삼 관련 약재, 음식, 관련 의례 및 공예품, 관련 노래 및 이야기 등이 풍부하고 한의학, 식품영양학, 민속학, 인류학, 경제학, 사회학, 국문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

<종목 지정 방식에 대한 검토>

○ 인삼재배와 문화는 특정 지역이나 가문, 계층에서만 향유하는 문화가 아닌 삼국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의 인삼재배 농가에서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소산이므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워 종목만 지정하는 것을 제안함.

<종목 지정 명칭에 대한 검토>

○ '19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19.1.24.) 시에는 '인삼재배와 문화'로 종목 명칭이 검토되었음. '인삼문화'는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며 '인삼'의 경우에는 재배와 관련된 농업기술과 전통지식이 관련 무형문화의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재배'라는 용어가 포함된 '인삼재배와 문화' 또는 '인삼재배'를 함께 제안함.

5) 추가 조사

○ 관계전문가 검토의견서 작성

- 기 간: '20.2~6월

- 관계전문가 : 3명

- 내 용: 인삼의 전통 재배법, 가공법 및 관련 전통문화 관련 연구조사 보완 사항 검토

○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 일시/장소: '20.6.18.(목) 16시 / 대전청사

- 참 석 자: 관계전문가 및 유관 기관 대표 7명 등

- 주요 내용: 지정 가치 조사 연구용역 내용 검토 및 보완, 지정 범위 및 명칭 등 지정 방향 자문 및 지정 관련 의견 청취

<종목 지정 명칭에 대한 재검토>

○ 인삼은 재배와 관련된 전통 농업기술 외에도 소비 및 가공과 관련된 향유 문화도 발달했기에 이를 포함할 수 있는 인삼재배와 소비, 인삼재배와 이용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한편, 고려인삼연합회 등 일부 기관에서는 지정 명칭과 관련하여 '고려인삼'을 제안하였음.

- 인삼 관련 문화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향후 농경 관련 전통지식의 추가 지정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 전통어로방식-어살'과 같이 '전통농경방식-인삼(재배와 문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제6차·8차 무형문화재위원회('20.7.17., 9.18.) 검토 시 '인삼재배와 이용(문화)', '인삼재배와 식이문화', '인삼재배와 문화', '(한국의) 인삼문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인삼재배 관련 문화', '인삼재배와 향유문화', '인삼재배와 가공', '인삼재배기술과 이용문화', '인삼문화 재배기술과 활용', '인삼의 재배 가공 이용' 등이 제시됨.

6) 지정 예고 기간('20.9.28.~10.27.) 의견 제출 현황

○ 의견 제출 건수 : 총 18건

- '약용문화' 대체 명칭 제시 : 16건 (문화 15건, 이용문화 1건)

- 종목 명칭에 '고려인삼' 명시 : 17건

※ **고려인삼**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 **고려인삼의 높은 역사성** : 고려인삼은 중국의 신농본초경집주(5세기), 신수본초(7세기), 본초강목(16세기) 등에 나오며, 17세기 하멜에 의해 서구에 고려인삼 명칭이 알려진 것으로 추정됨. 우리 인삼의 **오랜 재배 역사, 재배 기술, 우수성, 높은 효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명칭임.
- **남북 유네스코 공동 등재 및 인삼 산업 보호**: '16년 북한이 '고려인삼 재배와 이용풍습'으로 지정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최근 중국이 동북공정의 하나로 자국 인삼을 '고려삼'으로 부르고 있으며(상표 등록 허용), '고려인삼(대한민국 영토에서 생산되는 인삼)'이라는 명칭으로 **중국 안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인삼'으로 지정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함.

* 그 외 지정 명칭과 관련하여 『한국농어민신문』의 「“인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고려인삼’으로 명칭 표기를”」(20.10.13.) 신문 기사 1건이 있었음.

라. 검토의견

-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 사회문화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기간 중에 지정 명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정 명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마. 심의할 사항 :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여부

바. 의결사항

- 가결함 (출석 7명, 가결 7명)
 -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함.
 -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지정함.

2.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교육조교 인정 심의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교육조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수교육조교 인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80.11.17.지정)
- 보유단체 :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86.11.1.인정)
- 전승자 현황

구분	성명	인정일	예능
보유자	김윤수	1995. 6. 1.	무가
조교	이용순	1996. 7. 1.	무녀, 악사
”	이용옥	2014.12.16.	심방, 악사

2) 추진경과

- 2020년도 전승자 충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20.1월)
- 우리 청에서 보존회에 전수교육조교 대상자 추천 요청(‘20.4.7.)
- 보존회 전수교육조교 대상자(2명) 추천(‘20.5.18.)
- 조사방식 논의를 위한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20.9.11.)
- 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 실시(‘20.9.24.)

3) 조사개요

- 일 시 : 2020.9.24.(목), 13:00~15:20
- 장 소 :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관
- 조 사 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대상자(2명) : 보존회 추천 이수자 2명(무녀1, 무가1)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에 의거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등 실시
 -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20.8.31.)에 따라 조사지표 변경
 - * (변경사항) 관련 분야 입상 실적(7점) → 전수교육 참여 실적(7점)
- 조사지표
 - 조사방법 : 대면조사
 - 조사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별표2] 에 의함
 - ※ 전승기량(실기능력 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별첨2]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에 의함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수교육조교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심 의 할 사 항 :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교육조교 인정 여부

바. 의결사항

- 가결함 (출석 7명, 가결 7명)
 - 고덕유를 국가무형문화재 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3. 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인정 심의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별신굿’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수교육조교 인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별신굿’(‘87.7.1.지정)
- 보유단체 : 남해안별신굿보존회(‘87.7.1.인정)
- 전승자 현황

구분	성명	인정일	기·예능
보유자	정영만	‘96.5.1.	악사(피리)
조교	공대원	‘96.5.1.	악사(장고)
조교	김현숙	‘96.5.1.	무녀

2) 추진경과

- 2020년도 전승자 총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20.1월)
- 우리 청에서 보존회에 전수교육조교 대상자 추천 요청(‘20.4.7.)
- 보존회 전수교육조교 대상자(6명) 추천(‘20.6.15.)
- 조사방식 논의를 위한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20.9.11.)
- 전수교육조교 인정조사 실시(‘20.10.7.)

3) 조사개요

- 일 시 : 2020.10.7.(수), 13:00~16:00
- 장 소 : 통영예능전수관
- 조 사 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대상자(6명) : 보존회 추천 이수자 6명(무녀2, 악사4)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종목)에 의거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등 실시
 -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20.8.31.)에 따라 조사지표 변경
 - * (변경사항) 관련 분야 입상 실적(7점) → 전수교육 참여 실적(7점)
- 조사지표
 - 조사방법 : 대면조사
 - 조사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별표2] 에 의함
 - ※ 전승기량(실기능력 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등의 인정 조사기준 고시’ [별첨2]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실기능력 정도 조사지표 및 조사지표 산식에 의함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수교육조교 인정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심 의 할 사 항 : 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 인정 여부

바. 의결사항

- 가결함 (출석 7명, 가결 7명)
 - 이선희, 이현호를 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20-10-004

4. 국가무형문화재 제98호 ‘경기도도당굿’ 정상화 조치계획(안) 검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1호,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보 고 사 항

보고사항

안전번호 무형2020-10-005

5. ‘옷채취기술’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연구용역 결과

가. 보고사항

‘옷채취기술’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따라 ‘옷채취기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20.6.17.~10.14.)을 실시하고, 최종 점수가 60점 미만 이므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임.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제 14조(심의안전 상정) ③문화재청장은 조사결과 최종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 안전으로 상정하지 않는다.

다. 보고내용

1) 추진경과

-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조사 계획 수립('20.1.22.)
- ‘옷채취기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연구용역 실시('20.6.17.~10.14.)

2) 학술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6.17.~10.14.
- 조사기관 :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지정 조사의 조사지표에 따른 지정가치 조사
 - 조사지표별 심화조사

3) 조사내용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에 대한 종합검토>

- 우리나라에서 옷을 사용한 흔적 및 옷나무 재배 역사는 오래된 것으로 보이나, 옷액 채취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증보산림경제』 이외 그 기록이 보다

구체적으로 거의 남아 있지 않음. 관련 전승자 기록 또한 전무한 상황임.

- 현재 옷 채취 방법은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유입된 내용으로 기술의 전승 기간이 짧고, 옷액을 채취하는 기술 및 관련 도구가 단순하고 그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음.
- 현재 강원 원주, 충북 옥천, 경남 함양 세 지역에서 옷나무가 대단지로 식재되어 있음. 해당 지역에서 생칠을 통한 옷액 채취 인원은 5명 내외로 극소수이고, 대개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옷순이나 옷겹질, 옷닭이나 약재상을 통한 공급 등 식·약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관련 옷액 채취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옷채취기술’의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5) 종합의견

- ‘옷채취기술’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가치가 미흡함.

6) 의결사항

- 원안 접수함. (출석 7명, 접수 7명)